#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2. 3. 15. 행정건설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2. 2. 28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2. 3. 4.

다. 상정일자: 제253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22.3.15.)

상정. 심사. 의결

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】

## 가. 제안이유

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 시설을 민간위탁 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위탁사무명: 마포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
- 2)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  -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2조. 제21조
- 3)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
  -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
- 4) 시설 개요

- 위치: 마포구 매봉산로18, 2층(마포창업복지관)

- 규모: 87.98㎡(사회적경제 라운지, 코워킹스페이스)

5) 위탁기간: 2022. 9. 1. ~ 2025. 8. 31.(3년)

6) 수탁기관 선정방식: 공개모집

7)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: 179.000천 원(시비 33.000천 원, 구비 146.000천 원)

- 산출근거: 2022년 서울특별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침

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국모)

○ 동 시설은 신규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, 거버넌스 강화 사업, 사회적 경제조직 성장 지원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년 6월 1일 설립되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, 위·수탁계약이 2022년 5월 종료 예정임. 올 해는 동 시설의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하는 해 이므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5조1)에 의거 다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으로,

○ 동 센터는 센터장을 포함 총 4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사업비는 2022년 예산기준 179,000천 원(시비 33,000천 원, 구비 146,000천 원)인 바, 서울시의 관련 예산지원이 2022년 5월 종료 됨에 따라 6월부터는 전액 구비로 운영될 예정임.

<sup>1)</sup>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"구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21.5.6.>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>

-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 215개에서 2021년 말 335개로 증가 추세이며 그 동안의 운영실적 역시 상암 소설박스 활성화 지원사업, 우리동네 나눔반장 지원사업 등 다수의 공모사업을 진행하였고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, 마포구 주민기술학교,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 등을 추진하여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주민참여 확대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남.
- 이와 같은 운영성과를 고려하고 관련 조례<sup>2)</sup>에서 규정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도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동 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중 서울시 지원이 올 해 중단되는 바, 이에 대한 대비는 무엇인지 또 향후 관련 예산의 확보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서 설명이 요구된다 할 것임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- 5. 토론요지: 없 음
- 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- 8. 기 타: 없 음

<sup>2)</sup>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 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<sup>1.</sup>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<sup>2.</sup>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<sup>3.</sup>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<sup>4.</sup>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